

마곡공동구 운영·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9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7개 공동구 관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중인 업무로써, 금회 신규로 인수 추진 중인 마곡공동구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고,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관리 대행하고자 하며,
- 나. 『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19조 (대행사업)에 따라 관리 대행 승인 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마곡공동구
- 위치 :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, 마곡서로
- 규모 : 연장 2.66km (관리연장 5.32km, 2련)

본체	· L=2.66km (관리연장 5.32km) (2련 BOX)
환기구	· 16개소(강제 7개소, 자연 9개소)
관리동	· 지하1층 ~ 지상1층 (건축 연면적 590.22㎡)
배수설비	· 집수정(9개소), 배수펌프(18대)
소방설비	· 화재수신기(2대), 광센서 선형 감지기(5.5km), 연소방지설비(10개소), 방화문(16개소) 등
보안설비	· CCTV(40개소), 침입감지기(18개소) 등
통신설비	· 누설동축케이블(5.6km), 무전기(5대) 등
점용시설	· 전력, 통신, 상수도, 중수도, 열수송관

나. 주요 대행 업무

- 대행업무 추진근거
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
 -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
 - 공동구 관리대행 계획(시장방침 제1624호, 1994.8.13.)
- 대행기관 : 서울시설공단
- 대행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1.12.31.
 -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대행 협약서 적용('17.1.1~'21.12.31)
- 대행업무 : 마곡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
 -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, 시행에 관한 사항
 - 공동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
 - 공동구 본체·부대시설 관리 및 유지 관리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
 - 공동구 점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등
- 소요예산 : 1,288백만원 (2020년 예산)

다.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공동구는 국가중요·보안시설로써 공동구 관리의 안전성, 보안성, 효율성, 공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 시설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임.
- 현재 서울의 공동구는 '95년부터 여의도공동구를 비롯한 7개 공동구를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, 그 동안의 공동구 유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.
- 또한 공동구의 구조체 및 소방·방재·보안설비, 이중 중앙통제 시스템 등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소방서·군·경찰과 재난·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,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규 인수추진 중인 마곡공동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관리대행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※ 기존 7개 공동구 관리 대행 추진현황

- 1차 : '99.5.01 ~ '01.3.29 (1년11월, 서울시설공단 협약)
- 2차 : '01.3.30 ~ '09.9.27 (8년6월, 서울시설공단 재협약)
- 3차 : '09.9.28 ~ '12.9.27 (3년, 서울시설공단 재협약)
- 4차 : '12.9.28 ~ '15.9.27 (3년, 서울시설공단 재협약)
- 5차 : '15.9.28 ~ '18.9.27 (3년, 서울시설공단, 재협약)
- 6차 : '17.1.01 ~ '21.12.31 (5년, 서울시설공단, 재협약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 제44조의2 (공동구의 관리·운영 등)

① 공동구는 특별시장이 관리한다.

다만,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시행령(제39조)

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2. 4. 10., 2018. 1. 16.>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
3. 공동구의 관리·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관

○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9조(대행사업)

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다른 조례에서 “위탁한다”고 규정한 경우
2.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. 다만,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
3.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편성

나. 기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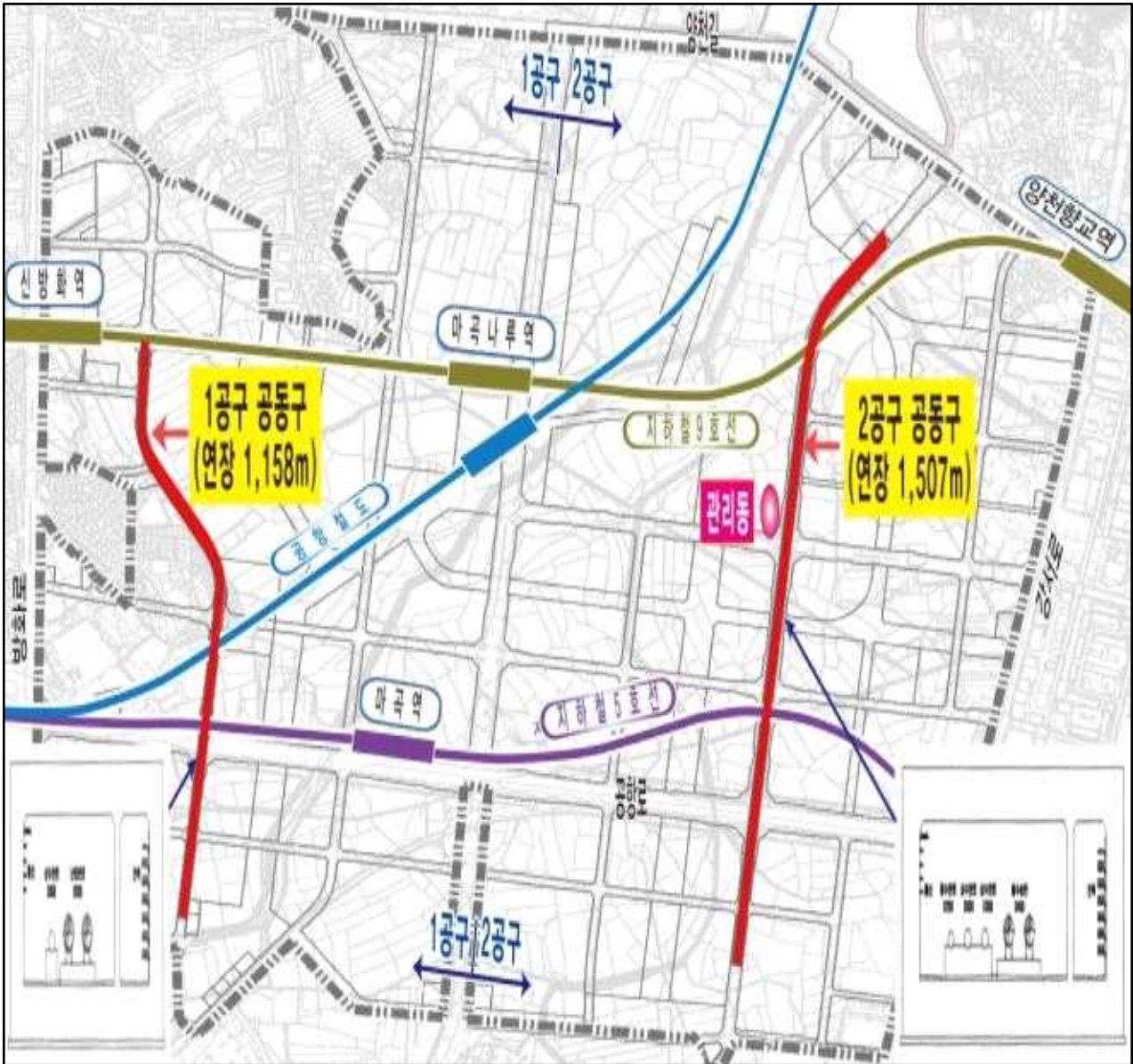
○ 해당사항 없음

붙임 1.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.

2. 마곡공동구 시설물 세부현황 1부. 끝.

※ 작성자 : 도로시설과 터널기전팀 전성민 (☎ 2133-1674)

○ 위치도



○ 전경사진



〈관리사무소〉



〈통신·상수·중수·열수송관〉



〈전력구〉

